

1. 의결주문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813호, 2025. 3. 18. 공포, 2026.3.19. 시행)됨에 따라 경고그림의 크기, 색상, 표기방법 등을 신설하고 경고문구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글자크기를 확대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문구 변경(안 제4조)
- 나. 경고그림의 크기, 색상, 표기방법 등 신설, 경고문구 글자크기 확대 및 세분화(안 별표1의2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국민건강증진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, 그”를 “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과음에 대한 경고문구”를 “경고문구 및 경고그림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고문구와”를 “경고문구 및 경고그림과”로, “경고문구의”를 “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”로 한다.
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 (제4조제2항관련)

1. 표기방법

가.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"경고 : "라고 표시하고, 법 제8조제4항에서 명시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.

나.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같이 표시할 경우,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배치하여야 한다.

2. 글자의 크기 등

용량에 따른 최소크기는 다음과 같다.

용량 기준	글자 크기	그림 크기
300ml 이하	10포인트 이상	8*8mm 이상
300ml 초과 500ml 이하	12포인트 이상	10*10mm 이상
500ml 초과 1ℓ 이하	16포인트 이상	12*12mm 이상
1ℓ 초과	18포인트 이상	15*15mm 이상

1) 전면코팅 용기(캔류, 코팅 병 등)는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크게 한다.

2) 경고문구로만 표시하는 경우, 글자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. (300ml이하 제외)

3. 색상

가.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은 테두리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등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.

나. 경고문구의 색상은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과 보색관계에 있는 등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.

다. 경고그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임산부 및 자동차 실루엣 : 검은색
- 경고그림 원 내부 배경 : 흰색
- 경고그림 원과 취소선 : 빨간색

4. 글자체

고딕체

5. 표시위치

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,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하단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)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<u>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,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	제4조(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) ①----- --- <u>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<u>과음에 대한 경고문구</u> 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.	② ----- <u>경고문구 및 경고그림</u> ----- -----.
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<u>경고문구와</u> 제2항에 따른 <u>경고문구</u> 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	③----- --- <u>경고문구 및 경고그림과</u> - ----- <u>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</u> ----- ----- 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